

# 「직접생산확인 구비서류 안내」

## 1) 제출서류

- ① 소재지 약도(연락처 기입).
  - ② 사업자등록증명 원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.
    - 사업자등록증상 '업태' 및 '종목'에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명 또는 세부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.
    - 예) 조명타워를 신청한 경우.
- |    |    |    |              |
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|
| 업태 | 제조 | 종목 | 가로등주 또는 조명타워 |
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|
- ③ 공장등록증명(신청)서 원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.
    - 해당품목의 산업분류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.  
[제품별 산업분류번호는 공공구매종합정보([www.smpp.go.kr](http://www.smpp.go.kr)) 메인 페이지 상단 "직접생산 확인" 또는 메인페이지 하단 "직접생산확인 기준"을 클릭하여 확인]
    - 해당 건축물이 500㎡미만으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공장은 "건축물대장", 동일 지번 "사업자등록증명" 및 "공장등록 미등록 확인서" 첨부.
  - ※ 여러 제품군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한 경우, 제품군 별로 생산면적과 생산시설이 구분된 공장배치도 첨부.
  - ④ 임차공장은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최근 3개월(은행 송금확인서).
  - ⑤ 보유 생산설비 명세서.
    - 작성양식 :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([www.kmic.or.kr](http://www.kmic.or.kr)) 공지사항 ->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->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  - ※ 여러 제품군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한 경우, 제품군 별로 각각 제출.
  - ⑥ 보유 생산설비의 구매 또는 임대에 따른 근거 자료.
    - 최근년도 결산서 상의 '유형자산감가상각 명세서' 중 '기계장치, 공구와기구' 항목 상세명세 제출.
    - 또는, 구매 당시 계약서(임대에 따른 계약서) 및 세금계산서 제출.
  -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직접생산확인 신청일 이후 발급 분),
  - ⑧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최근 3개월분).
  - ⑨ 여러 제품군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한 경우, 제품군 별로 구분된 생산직 조직도 제출.
  - ⑩ 생산공정도(세부품목별).
  - ⑪ 주요 원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.
    - 최근 3년 이내, 최소 1건 이상.
  - ⑫ 중소기업확인서(공공구매종합정보([www.smpp.go.kr](http://www.smpp.go.kr))에서 신청 및 발급).

## 2) 참고사항

- ① 조합에서 현장실태 조사시 실태조사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대표자 또는 업무 담당자는 실태조사원과 면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직접생산기준에 명기된 생산시설은 현장조사 당일 생산공정과 함께 사진촬영 가능토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③ 복사된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및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④ 제출서류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후 3일 이내 우편발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3) 제출처

우(07236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1011호 금산빌딩  
전화번호 : 02-780-4411 팩스번호 : 02-785-5067, 02-786-1791

**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**